

2022년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 사업 추진기준 안내

가. 목 적

-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*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고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

*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: 시스템 비계, 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업발판

나. 추진방침

-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보조지원 사업을 통해 시스템비계 보급 확산 기여
- 지원사업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비계·안전방망 중간점검 등 상시점검체계 운영

다. 추진절차



라. 추진내용

□ 지원대상 및 조건

1) 지원대상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[전문건설업체*(하도급) 포함]

* 「철근·콘크리트 공사업」 및 「비계·구조물 해체공사업」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하며 공사금액 기준은 원도급 금액(공단ERP)기준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가능

※ 지원제외 대상 :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(토목·건축공사업에 한함)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,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,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

※ 사업신청 및 문의 사업장중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[(전문)건설공제조합] 특별용자 혜택 등의 금융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여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보급 확산 유도

※ 당해연도 융자금 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(단, 융자금 결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)

2) 지원조건

- (시스템비계, 수직보호망)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(조건표는 본부 별도 시달)
- (낙하물방지망, 추락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*) 구입·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65%,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60%,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% 지원

*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지원 건설현장 당 2개까지 지원 가능

☞ 전문건설업체(하도급)의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의 보조지원

- 설치·해체 비용 등의 노무비를 제외한 임대비 또는 재료비에 대해서만 보조지원 가능

☞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현장

- 공단 지원금액에서 도급내역에 포함된 강관비계 금액, 안전방망 금액을 차감 후 지원

[공공 발주공사 보조금액] = {[시스템비계금액-강관비계 도급내역금액]/시스템비계금액}×해당면적 보조금

4) 지원한도 : 같은 건설현장 당 최대 3,000만원까지 지원하되 1회에 한하여 지원가능

- 단,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현장개소는 당해연도 3개소 이내로 함(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은 2개소를 1개소로 산정)

※ 같은 사업주 당 지원한도는 고용노동부 고시 및 공단 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

□ 절차별 추진내용(첨부의 '단계별 제출서류 안내' 참고)

○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지원 업무 흐름도

안전보건공단	사업주	공급업체
	① 보조금 지급 신청 ㉞ 신청서 ㉞ 투자계획서 (a)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(b) 도면 및 서약서 (c) 기술지도계약서 ㉞ 중소기업지원 정보활용 동의서 ㉞ 사업자 등록증 사본	① 보조금 지급 신청 ㉞ 사업자 등록증 사본 ㉞ 비계구조물·해체공사 건설업 등록증(해당시)
② 신청서 접수, 투자계획 확인 ㉞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(공단↔사업주) ㉞ 투자계획 확인표 ↳ 제출서류 확인(필요시 방문)		
③ 보조심사 위원회 상정(필요시) ㉞ 회의록		
④ 보조 대상 결정·통보 [15일 이내] ㉞ 결정 통보서 ↳ 투자완료 확인요청서(건설업) 1부 포함		

	⑤ 시스템비계 임차 및 안전 방망 등 구입·설치 ㉓ 계약체결(사업주↔공급업체) ㉔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(사업주↔공급업체)	⑤ 시스템비계 임대 및 안전 방망 등 설치·납품 ㉓ 계약체결(사업주↔공급업체) ㉔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(사업주↔공급업체)
⑥ 투자완료기한 도래 안내 [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] ㉓ 투자완료기한 도래 안내 및 연장 승인요청 시 제출서류 안내		
	⑦ 연장승인 요청 ㉓ 투자지연 시 연장요청	
⑧ 투자완료기한 연장승인 ㉓ 1회, 최대 1개월 이내 승인		
	⑨ 설비 투자완료 확인 요청 (사업주→공단) [설치완료일로부터 5일 또는 연장 승인기한 이내] ▶필수 제출서류 ㉓ 설비투자완료확인 요청서 ㉔ 수직보호망 설치 전경사진(해당시) ㉕ 사다리형 작업발판 반입사진(해당시)	
⑩ 설치·구입 완료 확인 [확인요청 후 근무일기준 10일 이내] ㉓ 설비투자완료 확인표 ㉔ 사진 첨부 ㉕ 설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㉖ 산재소멸 여부 확인 후 편철(ERP 확인) ※ 패트룰 현장점검 병행가능		
⑩-1 보완요청(공문) [완료확인 시 지체없이] ㉓ 투자계획서 미부합 시		
	⑪ 보완 및 투자완료확인 재요청 [설치완료일로부터 5일 또는 보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] ▶필수 제출서류: 상동 ㉓~㉕ ⑪-1 [설치완료 불가 시] 투자계획 변경 승인 요청 및 투자완료확인 재요청 [보완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] ▶필수 제출서류 상동 ㉓~㉕ ㉖ 변경사유서(공문에 사유 기재) ㉗ 변경된 투자계획서 (자체개선 및 보조구간 명기) [예시] 1~5층 보조, 6층 자체개선	

⑫ 설치·구입 완료 확인 [확인요청 후 근무일기준 10일 이내] ㉠ 설비투자완료 확인표 ㉡ 사진 첨부 ㉢ 설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㉣ 산재소멸 여부 확인 후 편철(ERP 확인) * 정산과 무관한 보완확인은 서류확인 가능		
⑫-1 변경 승인 및 설치·구입 완료 확인 [확인요청 후 근무일기준 10일 이내] ㉠ "투자계획변경 기술검토서" 작성 및 조건부 변경승인(자체개선 완료 증빙사진 제출 조건) ㉡ 변경 계획 대비 설비투자완료 확인표 작성, 정산(감액) ㉢ 사진 첨부 ㉣ 설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㉤ 산재소멸 여부 확인 후 편철(ERP 확인)		
⑬ 보조금 지급요청 안내(공단) (공단→사업주) ㉠ 보조금 변경·확정금액 안내 ㉡ 보조금 지급요청 안내 ※ 투자계획변경승인 문서 병행 가능		
	⑭ 보조금 지급요청 (사업주→공단) ㉠ 보조지원설비 보조금 지급요청서 ㉡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(사업주 및 공급업체) ㉢ 입금 희망통장 사본(사업주) ㉣ 전자(세금)계산서 사본 ㉤ 입금증빙서류(실투자금액·자부담금·부가세 전체를 입금한 입증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) ※ 투자계획변경 시 자체개선완료 증빙사진 제출	
⑮ 보조금 지급 ㉠ 국세청 폐업 확인 ㉡ (세금)계산서 사본 편철		
	⑯ 입금증빙서류 제출 (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) (사업주→공단)	
		⑰ 매입(매출)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(사업주, 공급업체→공단)

바. 사업수행 기준

○ 일반원칙

- 보조 대상설비

1. 수직·수평·가새재, 안전난간, 가설계단,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이 일체화된 시스템비계
2. 시스템비계 지원 현장에 한하여 수직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(플라잉넷) 지원

※ 지붕·철골 공사 등 추락사고 고위험 현장은 추락방호망만 별도 지원 가능

【안전방망 종류 및 규격】

품 목	기 준
낙하물방지망 (플라잉넷)	-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 - 사다리 : 폭 30cm내외 x 길이 2m이상
추락방호망	-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
수직보호망	-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

3. 경작업, 고소작업대·비계 등을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 사용하는 사다리형 작업발판*

* 사다리 상부에 작업발판이 부착된 사다리(일자형 사다리, A형 사다리는 제외)로 안전인증(S마크)제품에 한함

※ 시스템비계 신청사업장에 한해 동시에 사다리형 작업발판(현장 당 2개 이내) 보조지원 신청 가능

- 보조 대상여부 확인

· 공사금액은 「ERP/건설/사업장종합관리/개별사업장정보/사업장 현황」에 최초 등록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확인

- 시스템비계 지원신청시 부대 조건

- 수직보호망은 전면(4면)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설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
- 플라잉넷은 비계설치 최고 높이 10m 이상시 설치(단, 수직보호망 전면 설치시 생략가능)

- 설치완료시 확인요청 기한(사업주→공단)

품목	설치완료 확인 요청 기한
시스템비계, 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업발판	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

※ 보조대상자의 연장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

- 보조지원품목 보조금 조건표 및 단가 등: 별도 문서* 참조

* 재정사업부-5323(2021.12.17.) 「2021년 제4차 보조지원품목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」

○ 보조금액 산정

- (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) 보조금액 산정

· 설치면적 산정방법

- ① 설치면적(m²) = 건물 외주(4면)길이(m) X 높이(m) [높이(H) = 건물 높이 + 1m 적용]
- ② 경사부 높이 계산 : 지면 및 건물 상단부 고저차가 있을 때는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균높이로 각각 계산

· 보조금액 산정방법

- ①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은 설치면적에 해당되는 보조금 조건표상의 일정액으로 산정
- ② 공공발주 공사인 경우 시스템비계 보조금액은 $\{[(\text{시스템비계 소요금액}-\text{강관비계 도급내역금액})/\text{시스템비계 소요금액}]\times\text{해당면적 시스템비계 조건표 보조금}\}$ 으로 지원
- ③ 공공발주 공사인 경우 수직보호망 보조금액은 $\{[(\text{수직보호망 소요금액}-\text{수직방망 도급내역금액})/\text{수직보호망 소요금액}]\times\text{해당면적 수직보호망 조건표 보조금}\}$ 으로 지원
- ④ 보조금은 **천원 미만 절사**
- ⑤ 전문건설업체(하도급)의 경우 조건표상의 보조금에 **임대비 비율**로 산정

- (낙하물방지망, 추락방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) 보조금액 산정

· 설치면적 등 산정방법

구 분	단위	설치 면적 등 산정방법
낙하물방지망(플라잉넷)	m ²	건물 외주 길이 × 망 폭(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이상)
추락방호망	m ²	가로길이 × 세로길이
사다리형 작업발판	개	2개 이내

· 보조금액 산정방법

구 분	단위	보조금 산정 기준
낙하물방지망(플라잉넷), 추락방호망	m ²	면적 × 표준 단가 X 비율(0.5~0.65)
사다리형 작업발판	개	개당 표준 단가 X (0.5~0.65)

※ 전문건설업체(하도급)의 경우 안전방망은 재료비에 공사금액에 따른 비율(0.5~0.65) 적용,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원도급사 보조시와 동일 적용

○ 보조금 지급 신청

- 신청서 제출방법 :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방문 제출 가능
- 신청서 제출서류

-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(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) 1부
-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(개인공사 제외) 1부
-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(산재보험료 체납확인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여부 확인 가능시 제외) 1부
- ④ 견적서(원본) 및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1부
- ⑤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
- ⑥ 건축개요가 포함된 대상건축물 배치도·평면도·입면도·단면도(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 설치면적 확인용) 1부
- ⑦ 보조설비 신청 시 설치 할 현장의 전경사진(주변 식별 가능한 전경사진) 1부
- ⑧ 공급업체 비계·구조물 해체공사 건설업 등록증 사본(해당시),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

※ 단, 사다리형 작업발판 공급업체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제외

- ⑨ 건설 사업주 사업자 등록증 사본(해당시) 1부
- ⑩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서 사본(해당시) 1부
- ⑪ 시스템비계 또는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인증서, 방망 시험성적서 등 성능기준 충족 증빙자료 각 1부
(공급업체 계약이후 제출가능하며, 시스템비계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동일 공급업체가 동일 제품을
사용시 최초 제출한 서류로 갈음 가능하나, **방망의 경우에는 소모품이므로 접수 시마다 제출**)
- ⑫ 전문건설업체(하도급) 신청 시 원·하청 도급계약서 사본 및 원도급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
증명원 각 1부(단, 전산시스템(ERP)으로 원도급 금액 확인 가능 시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음)
- ⑬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(공단담당↔사업주) 1부

※ ②,⑤의 동의서 등은 전산시스템 구축 시 제출 생략 예정(별도안내)

- 신청서 접수 시 추진사항

- 보조금 지급 대상 및 제외요건 등 적정성 확인 후 적정 시 공단 ERP에 입력 및 접수
처리, 결재 후 사업장별 파일에 편철
- 신청서 접수 시 청렴의무 이행서약서(공단담당자 ↔ 사업주) 작성 후 편철
-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 시 공지사항 설명
- 시스템비계 설치와 병행하여 수직보호망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안내
- 투자계획 확인사항

① 확인방법 :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되, 현장
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가능

② 중점 확인사항

- ◆ 보조기준 및 보조기간 적정성, 신청서 및 투자계획 관련내용과의 부합여부
- ◆ 공사비에 시스템비계 포함여부 → 포함 시 대상 제외(공공발주 공사는 내역서 첨부)
- ◆ 보조신청금액 산정에서 공공 공사 도급내역에 포함된 비계 및 안전방망 금액의 차감여부
- ◆ 보조금 지급 신청 현장 전체 공사금액 확인

③ 확인결과 기록 : 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계획 확인표에 따라 검토내용을 기록
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시 보조심사위원회 심사 자료로 활용

- 신청서 반려조건

-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, 투자계획 확인 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
- 보완요청 후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

- 보조금 지급신청의 제한

- (일선기관) 지급사업장에 보조금 지급 취소 및 참여제한 확정통보 시 해당내용 본부 즉시보고
- (본부) 제한대상 사업주 관리 및 쏠 일선기관에 보조금 신청 제한 통보

제한기간	제 한 사 유
5년	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5년	아래 ②~⑤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
3년	② 지급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③ 보조시설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 등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않은 경우 ④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 외 사용한 경우(페이백 등) ⑤ 보조지원을 받은 후 시스템비계 등 보조시설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신청서 반려	보조금 지급 참여제한 기간의 종료 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

○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(필요시)

-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수행기준(운영규정, 처리규칙, 업무수행지침, 사업계획 등) 준용

○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및 통보

-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(공단)
 -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기준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심사(필요시)를 거쳐 지급대상자 결정
 - 보완요청 사업장이 보완을 완료한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(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)
- 결정 통보(공단 → 사업주)
 - 사업주에게 「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서」를 발급하여 통보

- ◆ 보조금 및 보조기간 등 지급조건에 관한 사항
- ◆ 설치 완료 확인 요청 기한 및 확인 요청서 제출에 관한 내용
- ◆ 투자설비의 안전기준 및 투자계획변경에 대한 사항 안내
- ◆ 사업주 자부담금·부가세 및 보조금 대금 지불 입증서류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에 관한 사항
- ◆ 투자(설치)완료 확인 요청시 구비서류 안내 등
- ◆ 자부담금 대납(페이백) 등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및 참여배제 등의 조치에 대한 안내*
 - * (예시) 「부정수급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과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로 환수 조치되며, 공급업체와 함께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」
- ◆ 기관별 재원을 초과하여 결정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지연(차년도 지급) 등 안내

○ 시스템비계 임대 및 안전방망 설치

- 계약체결 : 사업주와 공급업체간 시스템비계 임대·설치·해체 및 안전방망 설치계약
- 불량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 사용제한
 -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부적합한 방망 사용 및 부식 또는 파손 등의 중대 결함이 있는 불량자재를 임대·설치·구입하는 경우 보조대상에서 제외

- 시스템 비계 설치기준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준용) 준수
 - 시스템비계 구성품목 일체를 설치하되, 제조사가 정한 기준 준수
 - 비계 설치높이 : 건물 높이 + 1m 이상
 - 작업발판 폭 : 각 단별 작업발판 2열(40cm×2ea)설치 원칙
 - ※ 현장 여건상 부득이 작업발판 1열 설치 시 설치수량 만큼 정산
 - 벽연결(벽이음) : 제조사가 정한 벽연결 설치간격 기준 준수하여 비계의 전도 방지
 - 가설계단 설치 : 1개소 이상(건물외주(4면) 길이 50m 이상 시 1개소 추가)
 - ※ 가설계단은 돌출계단으로 설치하고 도심지 공사 등 돌출계단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내부계단 설치 가능
 - 안전난간대 : 작업발판 단부에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2단 설치
 - 시스템비계 작업발판과 구조물과의 이격 거리 : 30cm 이하
 - 선반지주(조정브라켓) : 비계 작업발판과 구조물 사이에 추가발판 설치 시 자율안전확인신고한 KCs마크 선반지주 사용 및 선반지주 상부에는 발판 1단만 설치 가능(2단 이상 불가)
- 안전방망 설치기준(KOSHA Guide 설치 기준 준용) 준수
 - 수직보호망
 - ① 확인사항 :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
 - ② 방망고정 : 시스템 비계 수직재 및 수평재에 견고하게 고정
 - ③ 수직보호망 설치시기: 시스템비계 설치 후 1주일 이내 설치
 - ※ 수직보호망 설치 후 전경사진을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아 지연 설치 여부확인(필요시 현장방문)
 - 낙하물방지망(플라잉넷) 또는 추락방호망
 - ① 확인사항 :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
 - ② 수직보호망을 시스템비계가 설치된 전면에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생략 가능
- 사다리형 작업발판 : 작업높이 기준 최대높이 3.5m 이하인 S마크 인증품에 한함
- 상시점검체계 운영
 -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의 사고사망감축 효과 거양을 위해 지원결정 후 비계 등 적정 설치·유지 상태 점검 및 추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여부 확인(세부지침 별도시달)
 - ※ 기술사업(패트룰, 안전보건지킴이) 연계 및 결정사업장의 10% 이내 자체선정 후 점검
- 투자 완료기한 도래 안내
 -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 중 3개월 이상 경과된 사업장에 대하여 투자완료기한 도래 안내 및 기한 내 설치완료 독려(SMS 등 활용)
 - 연장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및 절차 등을 안내
 - ※ 투자완료기한 연장은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

○ 투자계획의 변경

- 지급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 일선기관에 공문으로 변경 요청하고 공단은 검토 후 승인여부 통보

※ 시스템비계(1열, 2열) 및 안전방망(사다리형 작업발판 포함) 단위품목(설비코드)별 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(단위 품목별로 최초 결정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)

① 지급대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명, 대표자 등의 이력이 변경되는 경우

② 결정된 보조대상 설비가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

※ 예) 수직보호망에서 플라잉넷로 변경 또는 플라잉넷에서 수직보호망으로 변경 시

③ 투자 완료기한 내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일부 자체개선으로 변경되는 경우

※ 기한 내 시스템비계 설치 미완료 구간은 자체개선하고, 설치 완료 구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으로 투자계획 변경

○ 설치·구입완료 확인

- 사업주의 설치·구입 완료 확인요청(사업주→공단)

① 요청기한 : 보조금 지급설비 설치·구입 완료일로 부터 5일 이내

※ 단, 설치가 미완료된 경우라도 투자기한 내(연장 포함)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안내하고 미요청시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

② 요청방법 : 보조지원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를 설치·구입 완료 후 5일 이내 공단 일선기관장에게 제출

③ 요청서류

◆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

◆ 수직보호망 설치 전경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반입사진(해당시)

- 공단의 설치·구입 확인방법

① 현지방문 : 확인요청서 접수 시 접수일로 부터 근무일기준 10일 이내 현지방문 후 설비투자완료 확인표와 설비 투자(설치)완료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적정 설치여부 확인 및 개선유도*

* 정산과 무관한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제출사진 등 서류확인으로 대체 가능

② 대상설비 사진 :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은 건축물 4면*,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전체 개수

* 건축물 4면별 시스템비계 작업발판(1,2열), 비계 계단 및 안정방망 설치사진 등

※ 투자계획서와 부합되지 않거나 투자계획서 확인 내용이 부적합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보완 요청하고 보완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완기간 부여, 보완을 거부하거나 기간 내 미 보완 시 지급 결정 취소(보완기간 내 설치가 미완료된 경우 투자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승인 또는 결정 취소)

③ 설치·구입 완료 확인 시 특별기획점검(Patrol) 병행 가능(1인 수행 가능, 패트롤 보고서 별도 작성)

④ 설치·구입 완료 확인 시 사업주 자필 서명 등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* 징구

*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양식 참조

○ 보조금 확정금액 통보 및 지급요청 안내

- 보조금 지급설비 설치면적, 수량 등이 감소하여 보조금 감액 시 감액사유, 이의제기 안내 절차 및 보조금 지급요청 사항 등을 안내(공문)

※ 설계변경 등 설치면적이 증가하여도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 단위품목(설비코드)별 결정금액 초과 불가

- 시스템비계 설치 미완료구간 등 자체개선으로 투자계획을 변경 하는 경우 “투자계획변경 기술검토서”, 조건부 변경승인(자체개선 완료 증빙사진 제출) 사항 및 정산 내용 안내

○ 보조금 지급요청(사업주→공단)

- 사업주 보조금 지급요청 서류

- ◆ 설비 임대·설치·해체·구입 계약서 사본 1부
- ◆ 청렴의무 이행서약서(사업주 및 공급업체) 1부
- ◆ 입금 희망통장 사본(사업주) 1부
- ◆ 입금증빙서류(부가세를 포함한 실투자금액 전체를 입금한 입증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)
- ◆ 전자(세금)계산서 사본 1부

○ 보조금 선지급 및 보조(잔)금 지급

- 보조금 선지급

- 선지급 목적 :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시스템비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사업주 요청 시 보조금을 선지급 가능
- 대상 : 설치·구입 등 투자진행 중인 현장
- 지원결정금액의 70% 이내 보조금 선지급 가능(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)

- 선지급 이행보증보험증권

- ① 보험기간 : 선지급 요청일 이전일~공사종료일(ERP기준)+6개월
- ② 가입금액 : 선지급 금액의 100분의 120

- 사업주 선지급 요청 서류

- ◆ 산업재해예방시서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착수금 지급신청서 1부
- ◆ 설비 임대·설치·해체·구입 계약서 사본 1부
- ◆ 청렴의무 이행서약서(사업주 및 공급업체) 1부
- ◆ 입금 희망통장 사본(사업주) 1부
- ◆ 이행보증보험 증권 1부

- 보조(잔)금 지급

- 대상 : 설치·구입 등 투자완료가 확인된 현장
- 지급한도

- ① 보조금 선지급 사업주 : 최종 보조금 확정금액에서 선지급을 제외한 잔금

② 보조금 선지급 미요청 사업주 : 최종 보조금 확정금액 전체

· 보조(잔)금 지급대상
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보조(잔)금 지급가능

- ◆ 공단의 보조설비 설치·구입 완료 확인결과 투자 계획과 부합되고, 보조설비(시스템비계 등)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가 완료된 경우
- ◆ 보조설비(시스템비계 등) 전체 물량의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·구입 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사업주

· 최종 실투자비용 변경(감액) 사업장(시스템비계 해체 후) : 변경된 세금계산서 징구

※ 최종 실투자비용을 초과하여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인 후 환수 조치

- 보조설비 해체·사용 완료 이전 10일 이내 공단 ERP 산재소멸 여부 및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폐업사실 여부 확인 후 편철

※ 해체·사용 완료시점은 시스템비계 임대차(시공)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 기준으로 적용

- 보조금 지급 전 사업장 폐업사실 확인방법

· 설치·구입완료 확인 시

① 사업장 방문 전 공단 ERP 사업장관리(개별사업장 정보)에 접속 후 산재소멸 여부 확인 하여 개별사업장 파일에 편철

② 보조금 지급 결정사업장 중 산재 소멸된 경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

· 보조금 지급요청 시(개인공사 제외)

①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폐업사실 여부 확인 후 개별사업장 파일에 편철

② 지급요청 전 폐업·파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 조사

- 실거래 입증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지급제한

· 실거래 입증서류 : 사업주가 소요비용 전체(부가세 포함)를 공급업체로 입금한 입증서류

· 사업주 실거래 입증서류의 종류 및 구성요건

① 은행이 발급하는 입금(이체)확인증 : 사업주 및 공급업체 계좌번호, 예금주, 이체금액, 거래일시, 은행명 등이 표기

② 신용카드 매출전표(신용카드 및 카드매출전표) : 공급자 확인(서명)필요

· 실거래 입증서류를 대체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 기준

① 보험기간 : 설치·구입 투자 완료요청 이전일~공사종료일(공단ERP기준)+6개월

※ 공사종료(ERP기준)후 2개월 이내 입금입증서류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
(최종적으로 보조금 미반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만료일 20일 이전 본부 재정사업부로 공문제출)

② 가입금액 : 최초 보조금 결정통보금액

- 매입(매출)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

- 제출대상 : 사업주 또는 공급업체(시스템비계, 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업발판)
- 제출시기 : 차기연도 1월말까지

○ 보조금 지급의 취소

- 이의제기 기간 부여 : 취소 대상자에 대하여 2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 부여
- 보조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조건

전부 취소	◆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◆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(보조금 지급 전)
전부 또는 일부 취소	◆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 외 사용한 경우(페이백 등) ◆ 보조시설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◆ 보조시설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 등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않은 경우 ◆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(최대 5개월) 설치완료 확인요청을 미실시하는 경우 ◆ 설치완료 확인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내(30일)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* 설치 미완료 구간 자체개선으로 투자계획 변경승인 후 설치 완료구간의 투자완료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취소 제외 ◆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◆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금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(기 지급 보조금 환수) ◆ 지급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◆ 그 밖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일선기관장 등이 인정하여 보조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

- 연락두절(사업주, 공급업체)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단의 보완 요구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취소

- ①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포함한 취소예정 공문 발송 → ② 내용증명 발송 → ③ 심사위원회 → ④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통보

※ 이의제기 기간 : 공문발송 후 20일 및 내용증명 발송 후 10일 등 총 30일 이상 부여

○ 보조금 환수

- 재정지원사업 업무수행지침(보조금 반환 및 처리절차 기준) 준용

○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공급업체 필요 서류(일선기관에 사업신청 시 제출)

◆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◆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1부 ◆ 비계,구조물 해체공사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(해당시) * 비계 및 방망 견적금액 합계(부가세 포함) 1,500만원 이상 공사는 등록증 보유업체만 가능

※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사업소개>재정지원>건설업>공급업체)에 공급업체 정보게시를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여 필요서류 본부 제출